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16776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대표발의자 | 발의일자 | 심사경과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10호) | 이양수의원 | 2024.11.13.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40호) | 윤준병의원 | 2025. 1. 6.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

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2조 중 “발행·모집”을 “발행·모집·매입소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p> <p>1. 직무상의 행위</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u>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u>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생략)</p> <p>2. 의례적 행위</p> | <p>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 ----- ----- -----<u>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 ----- -----<u>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현행과 같음)</p> <p>2. -----</p> |

| | |
|--|---|
| <p>가. (생략)</p> <p>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u>화환·화분은 제외한다</u>)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p> <p>다. ~ 바. (생략)</p> <p>3.·4.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u>발행·모집</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 <u>화환·화분을 포함한</u> <u>다</u>----- -----</p> <p>다. ~ 바.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 <u>발행·모집·매입소각</u>----- -----.</p> |
|--|---|